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347 |
|----------|------|

발의년월일 : 2012. 11. 20.

발 의 자 : 나정숙·김영철·김동수·김동규·김철진·박은경·
송두영·성준모·전준호·황효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 우리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목적, 용어의 정리, 기본원칙 및 방향 등을 규정하고,(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제2장은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으로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력, 사업자의 협력을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제3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으로,
 - 제1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 실시계획을,(안 제7조 ~ 안 제8조)
 - 제2절 에너지 부분별 시책에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축부문, 수송부문을,(안 제9조 ~ 안 제12조)
 - 제3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비전선언,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건물 인증권장,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에너지 백서 등 발간사항을,(안 제13조 ~ 안 제19조)

- 제4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안 제20조 ~ 안 제25조)
- 마. 제4장은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 지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을 규정하였음.
(안 제20조 ~ 안 제29조)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 입법예고 : 2012. 11. .() ~ 11.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함과 동시에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구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감축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_2)·메탄(CH_4)·아산화질소(N_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

(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8. “공공 부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건물 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3.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발굴 및 생산, 적극적인 이용 및 보급
4. 고효율에너지기기자재 사용 활성화

제 2 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고효율기자재 사용 확대,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확대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시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①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 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제 1 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

제7조(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계획은 안산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성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시민실천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고효율기기의 사용,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보급 등 위하여 제7조의 조성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 2 절 에너지 부문별 시책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 노력
3.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교체 및 사용
4.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5.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및 부제 실시
6.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7.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대여시스템 도입,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프로그램

제13조(비전선언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비전선언을 할 수 있으며, 안산시·시민·시민단체·사업자·에너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실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비전선언과 시민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시와 시민, 시민단체, 사업자, 에너지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각 동은 동 주민센터, 주민조직 대표, 직능단체 대표, 시민단체, 공공시설 단체장, 에너지 관련단체 등이 참여는 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비전선언과 시민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천m²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 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태양광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당 평균 0.2킬로와트 이상
2. 일반주택 : 가구당 평균 2.0킬로와트 이상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임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절약건물 인증 권장)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 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해 에너지의 날 주간을 설정하여 관련행사 등을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별, 상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 예의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시장은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제 4 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제2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에너지 관련 전문가
 3. 전문기관·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4. 지역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
2.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등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민간의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2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추진, 에너지 절약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범시민운동 조직,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세대별, 건물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 진단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안산시 건축 조례」 제6조제3항제3호 중 “디자인 등”을 “디자인, 에너지 등”으로 한다.